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95
----------	------

발의년월일 : 2007. 7. 23.
발 의 자 : 문인수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저소득취약계층이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 소액납부대상자의 규모가 상당함.
 -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대표적인 특성은 고연령, 저학력, 무직 또는 노무자인 경우가 많음. 특히 단전 및 단수경험이 있을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수록 체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계층은 질병 발생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 및 건강수준에서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

□ 주요골자

- 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 추천한 명단을 참고하여 안산시장이 선정함.(안 제6조)

- 다.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음.
(안 제7조)
- 라. 지원 대상자의 빌굴과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하여 안산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음.(안 제10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233,892천원(년간)

19,491,000원(월 보험료 1만원이하 가구의 보험료 총액) × 12월 = 233,892천원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안산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체납가구 현황
- 안산시 건강보험 소액 납부가구 현황
- 지원기준 금액에 따른 예산수반사항
- 타 지자체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현황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②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범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 선정한다.

제7조(조사 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할 수 있다.

제9조(상호협력)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결)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안산시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